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75
------------	-------

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의자 :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장석춘 · 김정재 · 이은재  
홍철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u></p> <p><u>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u></p> <p><u>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